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이병진・이재관・이연희

송옥주 · 임호선 · 윤준병

복기왕 • 윤후덕 • 권칠승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 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 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재요양) ①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 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4조의2(재요양) ①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
	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
	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u>있다.</u>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